「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❍ 제 안 자 : 이은미 의원
- ❍ 제안일자 : 2025. 5. 9.
- ❍ 회부일자 : 2025. 6. 9.
- ❍ 상정일자 : 2024. 6. 10.

2. 제안이유

- ❍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·예방을 위한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창군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○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(안 제3조)
- ○ 위촉, 임기 및 해촉(안 제4조 및 제5조)
- ○ 명예환경감시원증 및 교부 및 관리(안 제6조)
- ○ 교육 및 활동지원 등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6조에서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,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조에서는 민간단체·사업자·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을 조성하고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❍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·예방을 통한 평창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❍ 안 **제3조(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)**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와 제한 행위에 대하여 구체화하여 규정함.

❍ 안 **제4조(위촉)**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조건을, 안 **제5조(임기 및 해촉)**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와 연임규정, 해촉 조건에 대하여 규정함.

❍ 안 **제6조(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)**에서 별지 서식에 따라 명예환경감시원증의 교부 및 반납 절차를 규정함.

❍ 안 **제7조(교육 및 활동지원 등)**에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무보수 원칙과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음.

5. 종합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하여 평창군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고, 자치사무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.

붙임 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3 (생 략)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가. ~ 바. (생 략)

사. 자연보호활동

아. ~ 더. (생 략)

5. ~ 7. (생 략)

□ 환경정책기본법

제6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,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자연환경보전법

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) ①국가 및 **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**

1.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

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·시행

2. 자연생태·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,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·시행

3. 소생태계의 조성,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·시행

4.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·복구 대책의 수립·시행

5. 생태복원기술의 개발,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·시행

6. 민간단체·사업자·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

7.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·연구·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

8.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

9.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

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자연생태·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

2.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,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·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(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)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3.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